

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[별표 3]

제조·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
(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. 이 경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제조·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과징금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다.
- 다. 연간매출액(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전체 연간매출액을 말한다)은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으로 한다. 다만, 신규 사업이나 휴업 등으로 연간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·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환산한다.
- 라. 부과권자는 제조·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사업 규모,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과징금 산출기준

등급	연간매출액	사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
1	5억원 이하	10만원
2	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	15만원
3	10억원 초과 ~ 15억원 이하	20만원
4	15억원 초과 ~ 20억원 이하	25만원
5	20억원 초과 ~ 30억원 이하	30만원
6	30억원 초과 ~ 50억원 이하	40만원
7	50억원 초과 ~ 70억원 이하	50만원
8	70억원 초과 ~ 100억원 이하	60만원
9	100억원 초과 ~ 150억원 이하	70만원
10	150억원 초과 ~ 200억원 이하	80만원
11	200억원 초과 ~ 250억원 이하	90만원
12	250억원 초과 ~ 300억원 이하	105만원

13	300억원 초과 ~ 400억원 이하	120만원
14	400억원 초과 ~ 500억원 이하	135만원
15	500억원 초과	150만원